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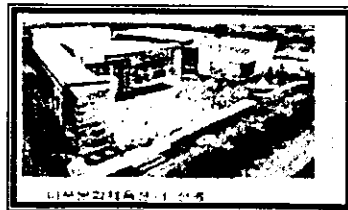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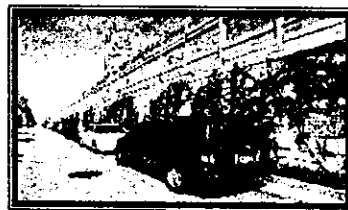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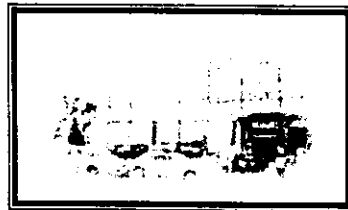
마포구시설관리공단(가칭)설립추진계획

요약보고회

건설교통국

- 목 차 -

1. 추진배경
2. 추진경위
3. 설립개요
4. 기대효과
5. 향후 추진일정



1. 추진배경

마포개발공사는 지역주민에게 신선한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서민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으나, 당초 설립목적과 달리 구 업무 대행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사자체 수익사업 개발의 한계성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공단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게 됨

1-1.공사형태 지방공기업의 한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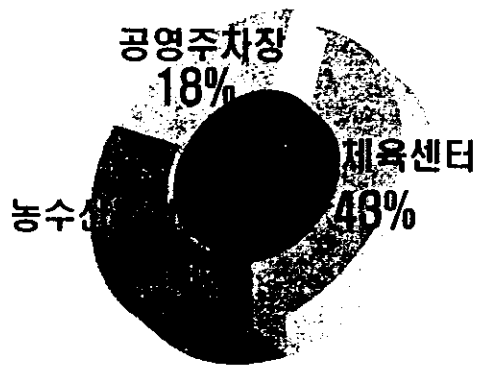
공사는 공단과 달리 공익성 보다 수익성이 더 강조되는 일종의 영리회사이나, 사업 범위의 제약 등 자체적인 수익사업 개발이 어렵고, 순수 민간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임

1-2.마포개발공사의 사업영역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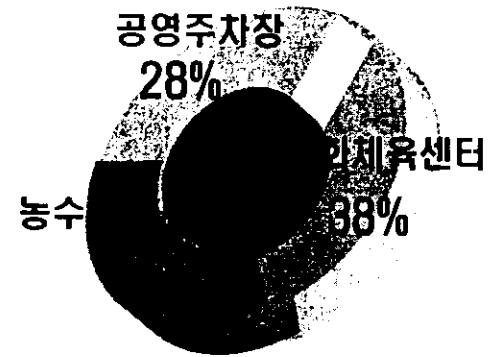
설립당시 사업



2003년도 사업



2004년도 사업



※ 타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설립유형

공기업법상 의무적용사항인 사업 또는 경쟁력 있는 특화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외에는 공사형태의 공기업 사례 없으며, 특히, 구 자치사무 위탁운영 사업의 경우 공사형태 전혀 없음

1-3. 사업내용상 공사성격에 부적합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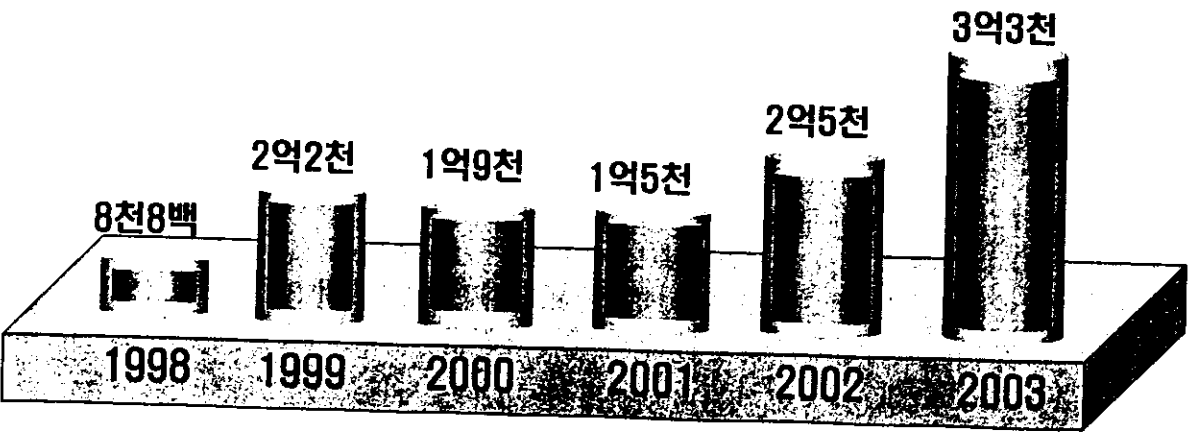
- ◆ 민·관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업을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간접경영하는 일종의 영리회사
- ◆ 민간출자 가능
- ◆ 공익성 보다 수익성이 강조
- ※ 민간부문의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영업상의 흑자를 실현해야 함

공단

-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전담 대행하는 공공업무 대행기관
- ◆ 민간출자 불가
- ◆ 수익성 보다 공익성이 강조
- ※ 영업상의 흑자를 실현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비용을 줄이면서 보다 전문성을 살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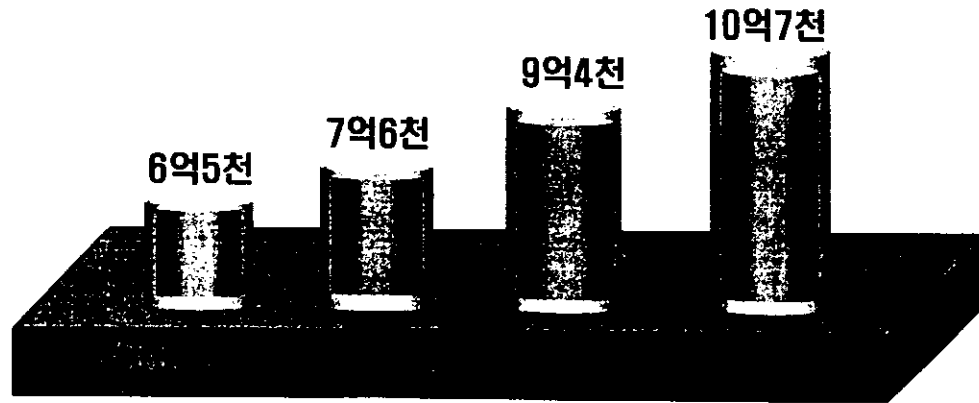
1-4. 부가가치세 납부금 증가

구 자치사무의 수탁운영에 따른 매출증가와 함께 부가가치세 납부금이 증가되어 구 대행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 수입으로 귀속될 상당부분을 국세로 납부하고 있음.
 ※공단의 사업은 부가세 면제, 공사의 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제6항)



1-5.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료 부담액 증가

서울시 공유재산인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부지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료 부담액 증가로 시장운영사업의 가장 큰 비용 요인을 공단으로 전환함으로써 대부료 감면 또는 무상 사용 등의 협상여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실익 도모 [근거:지방재정법 제82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2. 추진경위

2002. 08. 08	구청장 주재회의시 당면현안사항 보고
2002. 10.	마포개발공사 경영평가시 공단전환 권고
2002. 11. 08	마포개발공사 공단전환 타당성검토용역 보고
2003. 11. 17	공단설립(전환) 추진 검토
2003. 12. 05	공단설립추진 전담팀 구성
2003. 12. 10	행자부 공기업과 방문(공단전환 실무협의)
2003. 12. 11	공단전환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의견수렴
2003. 12. 22	공단설립 추진방향 결정(구청장방침 제1858호)
2004. 01. 13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계약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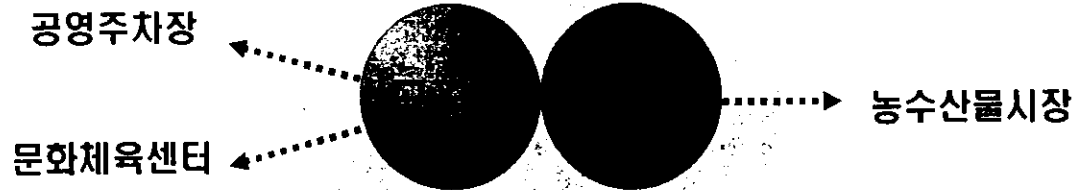
3. 설립개요

3-1. 설립 목적

공공서비스 사업의 공단위탁으로 전문성 확보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부가세 면제 및 사업수익을 구 재정에 흡수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

농수산물시장 사용부지의 대부료감면 또는 무상사용 등의 협상여지 마련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통한 지방공기업의 효율성 극대화 도모

3-2. 설립 일반

설립근거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지방공단의 설립·운영]

명 칭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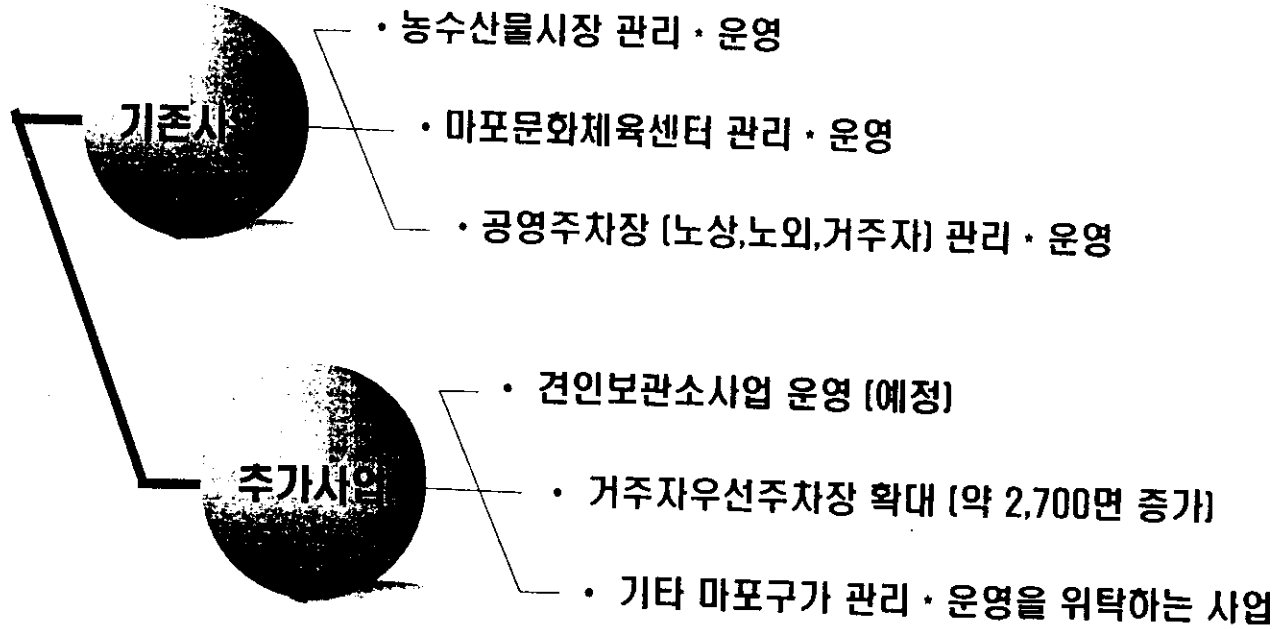
설립예정일 2004. 7. [예정]

공단사무실 현 마포개발공사 사무실 [예정]

설립자본금 5억원 [마포구가 전액 출자]

3-3. 사업 범위

마포개발공사 운영사업 및 신규위탁사업



3-4.기구 및 인력

기본방향

공단설립 타당성검토용역 결과를 기초로 타당성검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마포개발공사 기구

- ◇ 이사회 : 사장, 이사(상임-1, 비상임-3), 감사(비상임1)
- ◇ 기 구 : 1본부(2급), 6개팀(3급)

마포개발공사 인력현황

2004.1월 현재

구분	직급	총계	임원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직	고용직	계약직
총계	정원	175	2	1	6	9	12	21	4	11	109
	현원	160	2	1	6	6	8	14	7	11	105

4. 기대효과


운영효과

- ◆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시설물 관리의 효율적 추진
- ◆ 직접적인 관리를 통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 ◆ 자치사무의 공단위탁으로 작은 지방정부 구현

재정효과

- ◆ 공단 사업으로 창출된 수익을 구 재정에 흡수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확충을 꾀함
- ◆ 공단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으로 재정손실 방지
- ◆ 서울시에 납부하고 있는 대부료 경감 또는 무상사용 추진

5.향후 추진일정

- 
- 2004. 2. 10 공단설립타당성검토 심의위원회 구성
 - 2004. 2. 17 타당성검토용역 결과보고 및 심의위원회 개최
 - 2004. 2. 20 마포구시설관리공단(가칭) 설립여부 결정-구청장
 - 2004. 3. 02 조례(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 2004. 3. 08 조례(안) 구의회 상정
 - 2004. 3. 10 공단설립(전환)추진단 발족 (공사직원 포함)
 - 2004. 3. 정관 및 제규정 작성
 - 2004. 4. 마포개발공사 이사회 개최 (공사해산 결의에 관한건)

2004. 4. 공사해산 승인요구 (인가자 : 구청장)

2004. 5. 공단설립자본금 출자

2004. 5. 정관 및 제규정 승인 (인가자 : 구청장)

2004. 5. 이사장 임명 (임명권자 : 구청장)

2004. 5. 임·직원 승계 또는 채용

2004. 5. 업무 인수인계 (공사 사장 ⇒ 공단 이사장)

2004. 6. 공사 해산등기 및 공단 설립등기 (해산과 동시 설립)

2004. 7. 이사장취임 및 직원임용장 수여 (공단법인설립 즉시)

2004. 7. 창립이사회 개최 (정관 및 제규정 보고 등)